

2018년 상반기 창업지원 휴직 시행

□ 추진목적

- 재직 중 창업 도전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별 역량 개발 및 경력 전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부여

□ 주요내용

- **지원자격**: 실근속기간 20년 이상 직원 중 희망자
 -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근무자 (최근 6개월내 휴직, 교육파견자 등은 지원불가)
 - 교육파견 복귀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만료자
- **대상분야**: 제한 없음 (개인이 희망하는 모든 창업분야)
- **휴직기간 및 처우**
 - 휴직기간 : 최소 1년6개월 ~ 최대 3년6개월 (기간 내 6개월 단위 연장 가능)
 - 급여 :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간 월 기준급+역량급 100% 지급 (이후는 무급)
- **신청방법**: 희망자가 신청서류 작성 후 시스템 등록
 - 제출서류 : 창업지원 휴직 신청서, 사업계획서
 - 등록: ERP→HR→개인업무→인사정보→휴직/퇴직신청→창업지원휴직 신청
- **선발절차**
 - 1차: 사업계획서의 사업성, 준비도, 창업가 정신 등 평가
 - 2차: 1차 통과자 대상으로 결격사유 등 고려 적합/부적합 검증

○ 시행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시행공고	4.6(금)	전사문서
신청/접수	4.6(금) ~ 4.13(금)	ERP시스템
1차심의	4.16(월) ~ 4.17(화)	소속기관
2차심의	4.18(수) ~ 4.19(목)	인재경영실
최종선정/발표	4.20(금)	인재경영실
사전 워크숍	4.24(화) *대전연수원	인재경영실
협약 체결	4.25(수) ~ 4.27(금)	소속기관
휴직 발령	5.1자	소속기관

○ 운영사항

- 증빙서류 제출(의무사항)
 - 휴직발령 후 1년 이내: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 계약서
 - 휴직발령 후 1년 이후: 반기 익월 진행상태 보고
 - 의무휴직기간(최초 1년 6개월)중에는 복귀 불가
 - 휴직기간 추가 연장 희망 시 휴직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
 -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
 - 유급 휴직기간은 재직자와 동일한 복지 지원
 - 휴직기간 중 희망시는 의원면직 가능
- ※ 주의사항: 휴직기간 창업과 무관한 활동을 할 경우 인사조치 가능

○ 기타사항

- 창업지원 휴직은 회사가 창업희망자에게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, 업종결정, 사업실행 등 창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창업지원 휴직 신청자의 책임하에 추진함이 원칙
- 의무교육시행: 창업지원 휴직 선발자에 한해 사전 워크숍 시행